

TEL: 031)935-5780 FAX: 070)4324-5045 E-Mail: Namuarc@Naver.com

나무 건축사 사무

생 및 다세대주택 신축공

야당동 226-94

[건축물의 피난,방화구조 0∏ <u>|∘</u> 기존에 반한 귀칙]

제18조의 2(소방관 진입창의 기준) 제49조제3항에서 "국토교통부령으로

정하는 기준 "이란 각호의 요건을 ŀΟ 화작하는 첫 말한다.

-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. 이 경우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$\not \mid \succ$ <u>}</u> |||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. 끝까지의 수평거리가
- 반사 | |0 |-|1 붉은색으로

표시할

썻

Пф

샛

- 2.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
 3.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.
 4.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
 5. 창문의 크기는 푹 90센티미터 이상, 높이 1.2미터 이상으로 하고,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 이내로
-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
-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
-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L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샛



